

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4. 2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4. 2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년 4월 28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로과장 전영표)

가. 제안이유

-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·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
-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·관리 -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·관리한다.(안 제5조)
- 기금결산 - 기금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안 제9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답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를 개정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개정하는 이유는? ○ 현재 기금예치를 어느 금융기관에 하고 있는가? ○ 시금고로 몇 군데 은행을 지정하여도 무관한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재정법에 기금에 대하여는 시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어 시금고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시중 금융기관 중에서 시금고로 계약을 한 후 예치코자 함 ○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○ 시금고로 계약을 하면 몇 군데라도 상관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20호
의결년월일	2000. 5. 3 (제78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·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
-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·관리 -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·관리한다.(안 제5조)
- 기금결산 - 기금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안 제9조)

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시중 금융기관”을 “시금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”를 “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시장은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<u>신중 금융기관</u>에 예치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..... <u>신중고</u>..... </p>
<p>제13조(결산 및 보고) ①시장은 <u>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</u>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결산 및 보고) ①.....<u>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</u>.....</p>